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1. 7. 9.(금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6월 30일
- 회부일자: 2021년 7월 2일

## 3. 제안이유

-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이산화탄소, 휘발성유기화합물, 라돈 등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공기질 저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
  - (현행)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
  - (개정)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(안 제5조~제6조)
- 실태조사(안 제7조)
- 점검 등(안 제8조)
- 교육 및 지원(안 제9조~제10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‘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계획’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‘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’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효율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의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 학교 실내공기질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하면서, 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9조에서는 학교 실내공기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하여 정하고,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음.
-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